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39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이수진 · 김문수 · 김남희
전진숙 · 전종덕 · 송옥주
조정식 · 박희승 · 김정호
남인순 · 임미애 · 이건태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

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등 검역감염병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확인하는 등”을 “확인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u>확인하는 등</u>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u>제6조의2(검역감염병 정보 제공)</u> ① <u>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등 검역감염병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 ----- ----- ----- -----<u>확</u> <u>인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u>----- -----

② ~ ⑥ (생략)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